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본 보도자료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자실에 동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2011년 12월 9일(금)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장의식 생활제품안전과장(02-509-7246), 류연옥 연구사(02-509-7249) 보건복지부 나성웅 질병정책과장(02-2023-7550), 정성훈 사무관(02-2023-7548)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02-2110-7951), 서해엽 사무관(02-2110-7961)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균 위해예방정책과장(043-719-1726), 유대규 사무관(043-719-1726)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

□ 지난 11월 1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일부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이 발동된 것과 관련하여,

○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12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된 이번 대책에는,

○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 지경부·환경부·식약청)** 먼저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우선조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하여 ‘11년 12월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12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지경부·환경부·식약청)** 또한,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며,

○ 관계부처 협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11년 12월 중으로 신설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지경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2년 3월까지 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하게 하여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복지부·식약청)** 그리고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11.11.18.-11.28.)

□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복지부)**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12년 1월 확인되면,

* 1차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총 8종) 대상의 실험 완료시 시장점유율 기준 약 70%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험 완료

○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12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외부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된 7종**은 발병환자 사용 이력이나 제품 성분에 따라 실험 실시 여부 판단 (7종 포함시 총 20종에 대하여 실험)

□ 관계부처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부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2011. 12. 9.

지 식 경 제 부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2

1. 생활화학용품 관리 현황 ····· 2
2. 안전관리상 문제점 ····· 3

Ⅲ.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책 ····· 4

1.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 ···· 4
2.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 ·· 5
3.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 ····· 6
4.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 7
5.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 ····· 8

Ⅳ. 향후 계획 ····· 9

Ⅰ. 추진배경

□ 가습기 살균제 사고 경과

○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신고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요인으로 추정('11.4월~6월)

* 환자 18명 및 대조군 121명 대상 호흡기질환 유발요인 노출력 비교분석 결과

○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관리 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시작('11.7월~8월)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회수 권고 후 실험적 입증 및 인과관계 확정을 위해 동물 흡입독성실험 착수('11.9.26)

○ 흡입독성실험 결과 발표 및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명령 발동('11.11.11)

* 수거대상 제품 6종 중 1종이 세정제로 신고된 제품

○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11.11.18)

□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대두

○ 생활화학용품에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 상존

- 세정제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유사품목인 방향제,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은 품목의 최초 제조·수입시 공인기관의 제품검사 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검토,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Ⅱ. 현황 및 문제점

1. 생활화학용품 관리 현황

□ **(원료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

○ 제조·수입자가 물질의 용도, 독성정보를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이를 심사(평가)하여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

-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실시

* 「유해법」 시행(1991.2월) 이후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대상

** 유해성: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 **(화학물질 함유품목 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약사법」, 「공중위생법」, 「화장품법」 등으로 안전관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공산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함유품목 중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타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되며 현재 세정제 등 8개 품목을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정의하여 관리

- 일반 공산품으로서 원료물질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만 안전요건 규정

○ 「약사법」에서는 인체의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준(準) 의약품적 성격의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 탈모방지제, 스프레이파스, 감염병 예방 목적의 살충·살균제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으로 구분하여 화학물질 함유품목 관리

* 세척제, 샴푸 등은 각각 위생용품, 화장품에 해당

2. 안전관리상 문제점

□ **(원료물질 관리)**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미비

○ 유해성 평가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에 국한되어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확인·평가 곤란

- 국내 유통 화학물질(4만 3천종)의 약 15 %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 위해성: 유해성에 노출되는 강도·기간 등에 따른 피해정도

- 유해성 정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인체 위해성 정보 부족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부족은 화학물질 함유품목 안전관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안전관리 취약성을 노출

□ **(품목 안전관리)** 안전관리품목 지정 시스템의 한계 및 정보공유 부족

○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있음(positive system)

-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분이 모호한 품목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다수의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관계부처 협의 체계 미비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소관 법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기준)**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위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신규물질 등에는 취약

○ 현행 안전기준에서는 유해성이 확인되었고 동 품목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사용은 제한하고 있으나 그 외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점검 절차 미비

* 가습기 살균제 중 세정제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 살균제 측면에서의 안전성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Ⅲ.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책

1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 **(원료물질 조사)**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조사 및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선정('12년 3월)

○ 현행 「품공법」 상의 안전관리 품목 중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인체와 관련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우선조사

- 제조·수입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 제출 요청

* '11.11.17 (지경부)협조요청 공문 발송

○ 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위해성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

- 순차적으로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 모두에 대해 조사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위해성 평가)**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내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실시('12년~'13년)

○ 대상 제품의 사용특성(사용빈도, 대상 등) 파악 및 노출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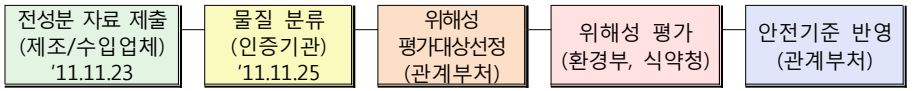
- 위해우려물질 함유, 노출특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위해성평가

* 향후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하는 유해성정보 및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화평법」 물질평가정보를 안전기준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근거 조항을 「품공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

□ **(안전기준 반영)** 위해성 평가 결과를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상시)

○ 안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품목별 안전기준에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표시사항에 반영



2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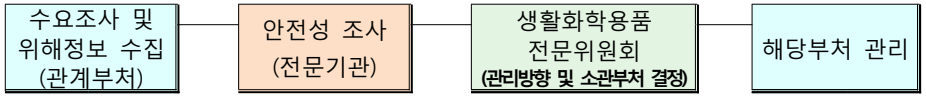
□ **(비관리 품목)**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적 검토

관계부처가 참여하도록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 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신설·활용
* 지경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청,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11년 12월)

○ **(비관리 생활화학용품)** 해당 품목의 특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 필요성 및 소관부처 결정('12년 3월)

- 관계부처, 인증기관, 소비자 단체 수요조사로 검토대상 선정
 * (물체에 대한) 염·탈색제, 방청제, 방부제, 방충제, 소독제, 정화제 등에 대한 재검토

○ **(신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신규 생활화학용품이 출시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방향 결정(상시)



□ **(관리대상 품목 중 신제품)** 기존 안전관리 품목이라도 사용방법이나 원료물질 등이 새로운 제품인 경우 인증기관 협의체에서 사전 유해성 점검(상시)

○ 안전관리대상품목 중 사용방법, 원료물질 등의 차별화로 기존 제품과 안전성이 다른 경우 인증기관 협의체*에서 논의 의무화

- 유해성 여부 평가 및 필요시 소관부처 재분류 등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 6개, 지경부 등으로 구성('11.11.25)

□ **(정보공유)**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유해물질 정보공유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종합정보제공('12년 중)

○ 제품안전포털시스템(지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환경부),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식약청) 등 관계부처 정보망을 연결

3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지경부]

□ **(원료물질 선언의무)** 화학물질 함유품목 제조·수입업체에게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선언 의무 부여(「품공법」 시행규칙 개정('12년 3월))

○ 자율안전확인 신청시 제조·수입업체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
 * 현재 일정농도 이상의 화학물질과 방부제 등 특정성분을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을 밝히고,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독성있음'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 특히 안전기준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조·수입업체가 해당물질의 안전성 점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내·외 유해성 평가자료 또는 사용사례, 연구문헌, 자체 평가자료 등

※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제출서류

(현 행)	(개 선 안)
· 신청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제품설명서	· 제품설명서
	· 화학물질 현황자료
	· 안전기준 외 물질 안전성 점검 자료

□ **(안전기준 보완)**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 개정

○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해물질 기준 추가
 * 평가 결과 안전기준에 상시 반영

○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를 부과('12년 3월)

- 안전과 관련하여 신고된 용도를 명시하여 동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안전함을 확인 받았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규정
 *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림('11년 12월 중 입안 예고)

4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복지부 · 식약청)

□ **(현황)** 약사법에 따라 인체의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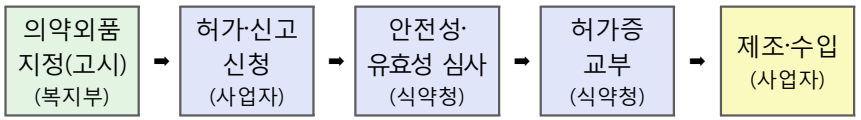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품별 허가·신고를 한 이후 제조·수입 가능

* 개별 제품별로 식약청에서 인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실시

○ 탈모방지제, 양모제, 스프레이파스, 자양강장변질제(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에 해당

* 의약외품 전체 18,277개 품목: 제조 13,456개(74%), 수입 4,821개(26%)

※ 의약외품 지정·허가 절차



□ **(향후 대책)**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관리

○ 의약외품 추가 지정 대상 제품 발굴을 위한 국내·외 물품 관리 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분석, 관리 방향 등 검토('12년 2월)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체 질병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등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12년 6월~12월)

*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11.11.18.-11.28.)

* 아토피 피부 가려움·자극 완화 목적의 크림 제품 등 의약외품 추가 검토 중

5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복지부)

□ **(실험대상)** 역학조사 중 시중에서 확인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 1차로 3종에 대하여 실험진행 중이며 실험결과 동일하거나 유사성분으로 확인된 6종을 포함 총 8종*이 실험 중

* 1차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총 8종) 대상의 실험 완료시 시장점유율 기준 약 70%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험 완료

○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험 예정('12년 2월)

□ **(실험방법)** 실험동물(쥐)의 가습기살균제 흡입 후 폐조직 변화 관찰

○ 1개월 및 3개월간 흡입 실험* 후 부검하여 폐조직 병리검사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정읍분소

(단위 : 마리)

구 분	계	A군	B군	C군	대조군
계	80	20	20	20	20
1개월 노출군	40	10	10	10	10
3개월 노출군	40	10	10	10	10

※ 실험시설 제한으로 한번에 4집단씩(제품 3종 및 대조군(증류수)) 실험

※ 주 5일간, 1일 6시간씩 가습기 살균제 전신흡입노출(whole-body inhalation)

□ **(진행경과)** 1개월 노출실험 결과 3종중 2종에서 이상소견 발견

○ 9월 26일 실험 시작 후 1개월 노출실험 부검 결과 판독 완료

-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8종) 중 2종 (6종)에서 이상소견(폐섬유화 등) 확인

○ 이상소견 발견된 2종과 동일·유사 성분 4종 등 총 6종 수거명령

□ **(향후계획)** 1차 실험(총 8종) 완료 후 **나머지 제품(총 5종) 추가실험**

○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 확인 예정('12년 1월중)

- 1개월 노출실험에서 문제가 없었던 1종과 동일·유사성분 1종 등 총 2종은 3개월 노출 실험 후 최종 판단 예정

○ 순차적으로 나머지 제품(5종) 대상 동일 실험 진행('12년 2~6월)

* 외부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된 7종**은 발병환자 사용 이력이나 제품 성분에 따라 실험 실시 여부 판단 (7종 포함시 총 20종에 대하여 실험)

Ⅳ. 향후 계획

□ **관계 부처에서는 주요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

○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 물질 위해성 재평가 ('12년~'13년)

○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 대응 ('12년 3월)

○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 ('12년 3월)

○ 의약외품 추가 대상 선정·지정 ('12년 6월~12월)

○ 가습기 살균제 추가 독성실험 완료 ('12년 6월)

□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과제에 대해 추진 지원 및 이행 여부 확인·점검**

참고 **가습기 살균제관련 세부 추진경과**

○ 4월25일**(환자발생 신고)** 의료기관의 신고에 의한 역학조사 실시

- 최초 신고 환자: 8명(임산부 7명, 남성 1명) → 4명 사망

○ 5월1일**(감시체계 가동)**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4개) 대상

- 감시체계 가동 결과: 유사사례 3건 신고 (5.1~31)

○ 6월2일**(중간경과 보고)**진행경과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발표

- 새로운 질환이 아니며 감염질환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음

- 임산부 사이에서 증가·확산되고 있지 않으며 고위험군의 근거 미약

○ 6월2일**(원인규명 연구착수)** '원인미상 폐손상' 위한 연구용역

- 환자 신고병원 중심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관련 학회 중심으로 질병 규모 및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시작

○ 7~8월**(역학조사 중간 보고 및 관계 부처 협의)**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가능성 제기에 따른 세포 독성 실험 및 총리실 등 관계 부처 협의

-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식약청)

- 안전성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 파악 및 협의 시작

○ 8월말(**의견 수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역학조사 및 독성물질 전문위원회' 회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

○ 8월31일**(역학조사결과 발표 및 권고)** 언론 설명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

-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 판매 중단 및 회수 권고

○ 9월26일**(실험동물대상 실험 착수)** 동물 대상 위해성 실험 착수

- 실험대상 80마리 중 40마리 1차부검 후 인체 조직과 병리소견 비교
-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 3종 중 2종에서 실험동물 호흡수 증가 소견

○ 11월4일**(실험동물 흡입독성실험 예비결과 발표 언론설명회)**

- 가습기살균제 2종 투여 동물에서 이상소견 감지, 사용 중단 필요성 권고

○ 11월10일**('역학조사 및 독성물질 전문위원회' 회의)**

- 동물흡입독성 시험 결과 및 강제리콜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1월11일**(**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 발표 및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 발동)**

- 가습기살균제 총 6종 강제수거명령 발동